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2014. 12.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목 차

Ⅰ. 상속 및 유언	1
1. 상속 및 유언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1
가. 개요	1
나. 한국 국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다. 미국 국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2. 상속제도 일반	3
가. 상속인과 상속분	3
나. 유류분	5
3. 유언	6
가. 엄격한 법정주의	6
나. 공정증서 유언	7
다. 자필증서 유언	7
라. 유언 집행	9
4. 상속재산의 분할	10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1
6. 부동산 상속시 필요한 서류	12
가. 단독 상속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12
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12
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7. 상속재산을 되찾는 방법	
가. 개요	13
나. 상속 재산 찾기	
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8. 상속세	
Ⅱ. 토지 취득	
1. 개요	
※ 거소신고제도	
2. 계약(매매, 증여)에 의한 토지취득	
3. 상속, 경매,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	
4. 국적 상실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23

5. 과태료	23
6. 부동산매각대금의 반출	24
Ⅲ. 부동산 등기 절차	25
1. 처분	25
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필요한 서류	25
나.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 필요서류	26
2. 취득	27
가. 시민권자	27
나. 영주권자	28
Ⅳ. 기소 중지	29
1. 기소 중지가 된 경우 해소방법	29
가. 개요	29
나. 기소중지 해소 방법	29
2.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	30
가. 개요	30
나. 특별자수자 조사·처분 특칙	30
다. 신청 방법	31
V. Q&A	32
Q1> 한국에 있는 큰아들이 상속을 더 받나요	33
Q2>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법에 따라 상속되나요	34
Q3>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35
Q4>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주기로 유언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나요	36
Q5> 미국 시민권자도 다른 상속인에게 더 물려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37
Q6>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8
Q7>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40
Q8>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42
Q9> 한국 땅을 갖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나요-	43
Q10>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땅을 취득할 수 있나요	44
Q1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땅을 살 수 있나요	45
Q12>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서 받은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나요	46
Q13> IMF 당시 있었던 일로 미국에서 기소중지를 풀 수 있나요	47
★ 관련 양식	50
★ 관련 정보 안내	53

본 설명 자료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본 설명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주 LA 총영사관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 자료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자료로서 실제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차이가있으므로 개별적 민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Ⅰ. 상속 및 유언

1. 상속 및 유언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가. 개요

- 상속에 관하여1)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피상속인(사망자)2)의 국적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다른 나라 법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나라의 법에 의합니다.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은 ① 사망자가 사망 당시 살고 있던 국가의 법, ② 부동산이 상속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 한편, 유언의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른 법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당시 살았던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가능합 니다.

[유언의 방식]		
미국 거주 한국인의 유언	한국법 뿐만 아니라 미국법(주법)에 따라 유언 가능	
미국 거주 미국인의 유언	미국법(주법)에 따라서만 유언 가능	
한국 거주 미국인의 유언	미국법(주법) 뿐만 아니라 한국법에 따라 유언 가능	

¹⁾ 누가 상속인이 될지, 상속인들은 얼마나 상속 받을지, 상속 포기는 할 수 있는지, 유언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말합니다.

²⁾ 피상속인이라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속한 국적의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나. 한국 국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한 한국 국적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던 경우 그 상속과 유언은 대한 민국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인³)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지를 불문하고 상속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사망한 한국 국적 사람이 미국에서 살았던 경우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미국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 미국 국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였을 경우

- 미국 국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미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유언으로 대한민국 법을 지정했다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 미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부동산을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상속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하도록 유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등기하려고 할 때에는 등기소에 자신이 상속인 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따로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것이 없으므로 상속인은 우선 자신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인지 증명하여야 하고, 한국에는 community property⁴) 제도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지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미리 미국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추후 상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³⁾ 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⁴⁾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재산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취득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됩니다.

2. 상속제도 일반

가. 상속인과 상속분

-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에서 정한 상속 방법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다르게 됩니다. 먼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아래 표에서 보는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보다 낮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순위 - 배우자5)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순위	상속인	예시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딸, 아들	
2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부, 모	
3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형, 동생, 자매	
4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숙부, 사촌	

⁵⁾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재혼한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순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	예시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함께 상속	배우자, 딸, 아들
2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함께 상속	배우자, 부, 모
3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형, 동생, 자매	
4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숙부, 사촌

- 부모 중 일방이 재혼을 한 경우에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가 별도의 입양 절차로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부나 모의 재산은 그 자녀 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 상속분이란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공동상속이라고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자녀들은 출가하였는지 장남인지 미국 시민권자인지 등과 상관없이 각자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보다 50% 더 받게 됩니다.

<예>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아들 1명, 딸 1명이 있는 경우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자녀의 상속분은 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과 관계없이 모두 같습니다.

<예>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아들 1명, 딸 1명,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아들 2/7, 딸 2/7, 배우자 3/7이 됩니다.

나. 유류분

- ㅇ 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주 등과 달리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 인에게만 남긴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제3자 또는 일부 상속인에게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60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합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재산, 사망자가 죽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것에서 사망자가 지고 있던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 '사망자가 증여한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공동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 유류분은 위에서 확정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계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딸, 아들)은 상속분의 1/2 만큼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증여,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⁶⁾ 상속재산의 시가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상속인이 배우자가 없고 장남, 차남이 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던 재산 1억원을 미리 장남에게 주고 사망한 경우차남이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액수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재산(0원) + 사망자가 증여한 재산(1억)으로 1억입니다. 차남의 법정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로 5000만원입니다. 차남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2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차남은 장남에게 2500만원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유어

가. 엄격한 법정주의

- 대한민국의 민법은 5가지 유언의 방식을 법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이고, 상속은 유언이 없었던 것처럼 집행됩니다.
-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자필증서 유언	직접 손으로 유언장 작성하기		
비밀증서 유언	비밀로 작성하기		
녹음 유언 녹음하기			
구수증서 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증서 유언 및 자필증서 유언의 두가지 작성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공정증서 유언

- 공정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공증인기에게 유언할 내용을 이야기하면 공증인이 대신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필요하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 유언에 참여할 증인 2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 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① 주민등록증, ② 도장,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재산별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 자필증서 유언

- 자필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 니다.
-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반면 사후 위조, 변조, 분실, 은닉 등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의 모든 내용은 유언자가 반드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컴퓨터, 타자기 등으로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⁷⁾ 공증인이란 한국법에 의해서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① 자필로 하고 ② 수정한 곳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목차	예시
유언 내용	A토지를 장남 홍일남에게 준다.
유언장 작성 연, 월, 일	2011년 1월 1일
유언자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100동 1001호
유언자의 이름	홍길동
유언자의 도장, 날인	(인)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해도 무방)

[예시] 유언장8)

유언자 홍길동

1950년 1월 1일생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유언사항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대지 100 평방미터 및 그 지상 가옥 50평방 미터를 장남 홍일남에게 준다.
- 2. 00은행에 예치(계좌번호 222-2222-222)되어 있는 예금 4,000만원을 차남 홍이남에게 준다.
- 3. 유언집행자는 김00 변호사로 지정한다.

2015년 1월 1일 유언자 홍길동 (인)

라. 유언 집행

-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이 아닌 나머지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즉시 유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유언장을 가 지고 가서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검인이란 법원이 유언의 내용, 유언증서의 형식 등을 조사하는 절차 입니다. 검인은 사후에 유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⁸⁾ 모두 손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마지막(인)이라고 써진 부분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 사망 후 법원에 유언장을 가지고 가서 검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 검인절차를 거친 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서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공유%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끝내고 구체적으로 누가 상속재산을 소유할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정하거나 제3자가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5년 내 분할을 금 지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누가 소유할지, 상속을 포기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말로도 할 수 있으나 상속인간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¹0))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는 법원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여 달라고 소송을

⁹⁾ 예를 들어 상속인이 A, B 2명이고 상속될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A, B는 위 부동산을 1/2씩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본 책자 49쪽에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¹¹)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인 피고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됩니다.

○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 분할 또는 현물 분할이 부적당할 때는 경매 후 현금으로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 ①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채무를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한 것이 됩니다.
 - ②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상속 채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물려받은 채무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 ③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음 상속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상속 순위의 사람에게도 상속 포기 사실을 알려주어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상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¹¹⁾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는 본 책자 50쪽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이 이루어진 후 자신이 물려받은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 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나 상속한정 승인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부동산 상속시 필요한 서류

가. 단독 상속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신청서 부본,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토지나 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신청서부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토지나 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12), 인감증명서13)

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미국국적 증명서류(시민권), 거소신고증(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 성명 변경이 되었을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하여 줄 서류(제적등본에 상속인이 표시되어 있으면 제적등본 사용 가능)

¹²⁾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인 경우 전원이 인감으로 간인해야 합니다.

¹³⁾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만약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7. 상속재산을 되찾는 방법

가. 개요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되찾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상속인이 상속 재산이 있는지	토지자산	조상땅찾기
1	몰라서 못 받은 경우	금융자산	상속인금융거래조회
2	다른 상속인이 서류위조 등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 <u>`</u>	수회복청구
3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못 받은 경우	Ŷ.	류분반환청구

나. 상속 재산 찾기

-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토지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손 중 상속인만이 가능하고,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에 의한 조회도 가능한데 이때는 상속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1장이 필요하고 상속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위임장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대한민국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청에서, 사망 신고 전이라면 대한 민국 전국 시, 군, 구청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 및 은행, 우체국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금융 재산은 물론 금융 채무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적등본과 상속 인의 신분증,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 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과 3개월 내 발급한 가 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과 한국 국적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미국 국적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위임장에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상속회복청구소송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경우, 상속 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 등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¹⁴)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¹⁵)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한편, 상속 재산을 침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넘긴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은 위에 쓰여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한국에는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최소한 유류분 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장남이 이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¹6)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설혹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¹⁴⁾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등기를 확인한 날입니다.

¹⁵⁾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¹⁶⁾ 유증이란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상속세

○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경우(상속인의 국적 불문)	
2	미국인이 사망하였는데 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한 경우	
3	미국인이 사망하였는데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각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이를 대신 낼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이 지난달의 마지막 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므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망자와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9개월이 지난달의 마지막 날 기한 내 신고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상속재산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일괄 공제라 합니다.
-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외에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과 5억원 중 큰 액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배우자공제라 합니다.

<예1>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12억원이고 배우자,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12억원입니다.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배우자는 4억원, 자녀 3명은 약 2억 6700만원씩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상속 액수가 5억원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5억원이 됩니다. 상속 재산(12억)에서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5억)를 뺀 2억원(12억-5억-5억=2억)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예2>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20억원입니다.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배우자는 12억원, 자녀는 8억원을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상속 액수가 5억원보다 클 경우 배우자 공제액수는 배우자의 상속액입니다. 상속재산(20억)에서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12억)를 뺀 3억원(20억-5억-12억=3억)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상속세 대상)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과세표준이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의 예2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은 상속재산(20억)에서 공제를 하고 난 3억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1억원 X 10% + 2억원 X 20%로 5000만원이 됩니다.

Ⅱ. 토지 취득

1. 개요

- 1998년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외동포법'의 시행에 따라 미국 국적의 동포¹७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관계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미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자유롭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의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은행거래를 하는 것도 편리 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국내거소신고가 더 편리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만약 부동산취득자금을 반입할 때에는 우선 외국 환거래법에 따라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소신고제도18)

가. 국내거소신고의 정의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재외동포는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¹⁷⁾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후손을 말합니다.

나. 효과

-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는 '재외국민국내 거소신고증'을, 미국국적동포(시민권자)에게는 '외국국적동포국내 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해주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각종 절차와 거래에 있어서 마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경우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국적동포(시민권자)의 경우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보다 편리하게 소유권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다. 미국국적동포(시민권자)의 국내거소신고시 필요한 절차

- 미국국적동포(시민권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²⁰) 또는 국적이탈신고²¹)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공관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공관에서 미리 못한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신고를 동시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 ㅇ 국적상실신고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2부,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22), 사진 1매(사이즈 2X2, 최근 6개월 이내), 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23), 최종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ㅇ 국적이탈신고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국적이탈신고서(법정양식) 2부, 국적이탈신고사유서(법정양식) 2부, 외국거주사실증명서(법정양식) 2부,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최근 6개월 이내 영사관 또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2부, 본인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추가서류

- ① 부모가 현재 영주권자인 경우 : 유효한 한국여권과 영주권 원본 및 사본 각 2부
- ② 부모가 현재 시민권자인 경우 : 유효한 미국여권과 미국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각 2부
- ③ 부모가 현재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로서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청(I-485) 관련 이민국 접수 영수증 원본 및 사본 2부
- ④ 부모가 현재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사본 2부
- 이와 같은 국적상실·이탈신고를 마친 후 국내에 입국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거소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사진 1장,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서, 2008. 1. 1. 이전에 국적상실·이탈된 경우 국적 상실·이탈이 표시된 제적등본, 2008. 1. 1. 이후에 국적상실· 이탈된 경우 국적상실·이탈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경우 국적상실신고접수증²⁴)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사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라. 영주권자 첨부서류

- 여권, 사진 1장,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25), 영주권 사본

2. 계약(매매, 증여)에 의한 토지취득

- 미국국적동포(시민권자)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토지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 신고를 하려면 토지취득신고서와 매매,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상속, 경매,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

- 미국국적동포(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경매, 법원 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은 대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경매의 경우 대금을 다 낸 날로부터 6개월,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¹⁸⁾ 본 내용은 미국국적동포(시민권자)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2015. 1. 22.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고도 국내거소신고와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거소신고는 2016. 7.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국내거소신고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2005. 1.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¹⁹⁾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²⁰⁾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²¹⁾ 국적이탈신고는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²²⁾ 최근 6개월 이내 영사관 또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말합니다.

²³⁾ 이름이 변경되어서 미국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상이한 경우라면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가 필요합니다.

²⁴⁾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접수증을 말합니다.

²⁵⁾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는 제외됩니다.

○ 신고인은 토지취득신고서에 다음의 취득원인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 :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6)

- 경매 : 경락결정서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4. 국적 상실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도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인은 소정의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5. 과태료

- 토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계약(매매, 증여)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²⁶⁾ 상속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상속, 경매,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토지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부동산매각대금의 반출

- 자신 명의로 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국내 재산으로 매입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와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한국 주소지27)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부동산 매각 대금 자금 확인서를 위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가지고 오거나 미국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한국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외에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지정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²⁷⁾ 최종주소란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 거주지를 말합니다.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사람의 경우라면 출국할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말합니다.

Ⅲ. 부동산 등기 절차

1. 처분

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필요한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28)
 -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공무원이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 순위 등을 기재하여 확인 도장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주는데 이것을 등기 권리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도시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를 따로 만드셔야만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 확인 서면은 한국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고. 확인조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등기소에 가셔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인감증명

- 영주권자의 경우 최종 한국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아포스티유²⁹)가 있어야 합니다.

²⁸⁾ 보통 '집문서'라고 말하는 문서입니다.

²⁹⁾ 미국 시민권자는 서명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해당 카운티 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서명확인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아포스티유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ㅇ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영주권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30) 주민등록등본 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동일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31)

ㅇ 번역문

-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한글로 기재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ㅇ 이 외에도 매매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나.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 필요서류

- 처분위임장
 -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부동산과 수임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³⁰⁾ 현재 주소지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³¹⁾ 동일인 증명은 각주 29)의 설명에 따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따라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위임장 작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2. 취득

가. 시민권자

-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ㅇ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방법
 - 발급대상 :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과거 등록 외국인 또는 동포로써 거소신청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등록한 적이 있다면 최초부여발급은 전국 사무소 중 서울 출입국사무소, 세종로 출장소만 가능, 재발급은 전국 사무소 및 출장소중 가까운 곳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의 경우 입국하지 않아도 대리로 발급신청 가능하며 대리로 발급신청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 등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 시민권자가 상속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내 시, 군, 구청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필증은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나. 영주권자

○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일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상속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된 주민 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주민등록제도 시행전 출국자 등)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Ⅳ. 기소 중지

1. 기소 중지가 된 경우 해소방법

가. 개요

- 기소 중지란 피의자³²⁾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수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으나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해두는 것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고소를 당한 경우 대부분 한국 검찰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기소중지가 됩니다.
-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권 갱신을 신청하더라도 여권 갱신이 거부됩니다.

나. 기소증지 해소 방법

-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기소중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기 신청이란 기소 중지된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겠으니 수사를 다시 하여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된 사람은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재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거나 재판 없이 벌금형을 받을 수도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³³)나 기소유예³⁴) 등 불기소 처분을 받

³²⁾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으로 고소, 고발된 사람이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³³⁾ 무혐의 처분이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처분을 말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죄질, 피해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2.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가. 개요

- IMF 기간에 입건된 경제사범은 특별 자수를 하는 경우 국가경제 위기 상황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특별자수자 조사ㆍ처분 특칙

- 한국 검찰에서는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면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정보를 특별자수를 한 사람에게 제공하여 국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피해변제를 한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 전화, 우편 등에 의한 간편한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조사 만으로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³⁴⁾ 기소유예 처분이란 수사 결과 죄가 인정되어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사만으로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의자가 국내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 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 신청 방법

- 2013년부터 처음으로 IMF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되었고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본인의 거주지 인근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자인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35)을 지참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³⁵⁾ 국내외 신분증 모두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할 경우 현재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ex 기간 만료된 여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바뀌었고 바뀐 이름으로 발급된 신분증은 별도로 동일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V. Q&A

Q1> 한국에 있는 큰아들이 상속을 더 받나요 아닙니다.

<상담사례>

어머니 슬하에 형제는 저와 오빠 둘인데 오빠가 큰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니 생전에 1억원인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오빠와 어머니는 한국 국적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2억원 예금도 오빠가 큰아들이니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큰아들이 상속 을 많이 받는 건가요? 미국에 있는 제가 상속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1)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고 피상속인(사망자)이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큰아들의 상속분

유언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는 모두 동일하게 상속을 받고 장자인지 결혼을 하였는지 등으로 상속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증여를 해준 경우

자녀 중 1명이 피상속인(사망자)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속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위 경우 상속재산은 어머니가 남긴 예금

2억원과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 1억원의 합산액인 3억원이 됩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상속을 동일하게 받게 되므로 상속재산의 1/2씩 받을 수 있어 결국 1억 5000만원씩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오빠가 어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오빠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오빠는 이미 1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예금 2억원 중 50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상담자는 예금 중 1억 5000만원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Q2>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법에 따라 상속되나요 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사례>

한국 국적의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돌아가 셨으니 미국법에 따라 재산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답변>

1)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고 피상속인(사망자)이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상속권

한국에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 상속을 더 받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아버지 재산의 2/5를 상속 받고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의 3/5을 상속 받게 됩니다. Q3>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담사례>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저는 미시민권자라 한국국적을 포기하였으니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을 자신들 이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지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고 피상속인(사망자)이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미시민권자라도 국내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회복청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서류 위조 등으로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경우, 상속 순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 등 상속재산이 침해 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담자가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을 형제들이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형제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가 형제들 이름으로 된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 3년, 부동산의 등기가 형제들 이름 으로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4>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주기로 유언 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상담사례>

저희 아버지가 미 영주권자이십니다. 미국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재산 1억 5000만원을 모두 친구에게 증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가 이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1) 피상속인(사망자)이 미 영주권자인 경우 상속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고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 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상속법상 유류분이 적용됩니다.

2) 유류분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은 3/5이고 상담자의 법정상속분은 2/5이므로 어머니는 3/10만큼, 상담자는 2/10만큼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1억 5000만 X 3/10 = 4500만원, 상담자는 1억 5000만 X 2/10 = 3000만원 만큼 아버지 친구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5> 미국 시민권자도 다른 상속인에게 더 물려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저희 아버지 재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유언으로 15억을 저희 큰오빠에게 나머지 15억은 작은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유류분으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고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국 시민 권자여도 유류분 반환청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2) 유류분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상담자의 각법정 상속분은 1/3로 동일하므로 상담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1/6을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속재산 30억 중 1/6인 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큰오빠와 작은오빠에게 각각 2억 5000만원씩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O6>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상담사례>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상속재산으로 건물 한 채를 남겼는데 형님은 한국에서 살고 누님은 미 영주권자, 저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3남매가 재산을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1) 상속인이 미 영주권자, 미 시민권자일 때의 상속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고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 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영주권자, 미시민권자여도 한국 국적의 사람과 동일하게 상속합니다.

2) 상속재산을 갖는 형태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 즉 3남매가 아버지의 건물을 1/3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모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나누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나눌 수도 있고 한명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일부가 법원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고 하고 피고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부채나 재산이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른바 '조상 땅 찾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960년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손 중 상속인만이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대한민국 전국 특별·광역시, 도청에서, 사망 신고 전이라면 전국 시, 군, 구청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에의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의 가장 아래 [서식 5]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위임장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금융재산, 채무의 경우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은행, 우체국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각 금융회사에 일괄 적으로 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통합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금융재산은 물론 금융채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지참할 서류로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과 3개월 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Q8>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명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사례>

한국 국적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유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유언장을 가지고 가서 검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검인이란 법원이 유언의 내용, 유언증서의 형식 등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법원 조서에 기재하여 놓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피상속인(사망자) 사후에 유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막도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인을 한 후에는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Q9> 한국 땅을 갖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저는 원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한국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이 땅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답변>

1) 토지의 보유 가능여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 수 있고 관계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신고 방법

신고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국적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에 제출 하면 됩니다. Q10>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땅을 취득 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 시면서 땅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이 땅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토지 취득 가능 여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 수 있고 관계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토지 취득 신고 방법

신고기간은 대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경매의 경우 대금을다 낸 날로부터 6개월,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토지취득신고서와 다음의 취득원인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군청,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 :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 : 경락결정서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Q1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땅을 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담사례>

제가 미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땅을 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1) 토지취득 가능여부

미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고 미국 시민권자와 달리 별도의 토지취득, 보유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2)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 한국 토지 취득 가능여부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 한국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동포가 미국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위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다시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 취득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와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 한국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부동산 매각 대금 자금 확인서를 위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합니다.

Q12>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서 받은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나요

☞ 한국에 입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여권 갱신 신청을 하였는데 2004년에 입건된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여권 갱신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당장 입국하기는 힘들어서 미국에서 조사받고 싶은데 기소중지를 풀려면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검찰청에서 직접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무혐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기소중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죄질, 피해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도주, 증거 인멸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O13> IMF 당시 있었던 일로 미국에서 기소중지를 풀 수 있나요

☞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대상자라면 미국에서 재기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1998년에 제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되었고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제가 미국에 있는 바람에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입국하기는 힘들어서 미국에서 조사받고 싶은데 기소중지를 풀려면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야하나요?

<답변>

1)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대상자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조사, 처분상 특칙

- ① 한국 검찰에서는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정보를 특별자수를 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취소가 되는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이메일, 전화, 우편 등에 의한 간편한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가 실시됩니다.
- ② 만약 위와 같은 조사만으로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의자가 국내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게 되고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 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3) 신청방법

2013년부터 처음으로 IMF 당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되었고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거주지 인근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자인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관련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36)

2010. 1.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3번지 망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홍일남, 홍이남, 홍삼녀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1. 상속재산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300㎡는 홍일남의 소유로 한다.
- 1. 상속재산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200㎡는 홍이남의 소유로 한다.
- 1. 상속재산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00㎡는 홍삼녀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15. 1. 1.

_						
주	소					
성	명	홍일남 (인)	주민등록번호	_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홍이남 (인)	주민등록번호	_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홍삼녀 (인)	주민등록번호	_	전화번호	
	•					

³⁶⁾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상 속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37)

청구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번지 상대방 홍희동(주민등록번호) 주소생략 피상속인 홍ㅇㅇ(2010. 1. 1. 사망)

청구취지

-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은 청구인 소유로, 2 내지 3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2. 상대방은 별지 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 ㅇㅇ원을 지급하라.
-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 1. 청구인과 상대방의 신분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망 홍ㅇㅇ의 자녀로 형제관계에 있습니다.
- 2. 망 홍 ○ 의 사망 망 홍 ○ ○는 2009. 1. 5.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망 홍 ○ ○의 상속인 으로서 망인의 별지목록 기재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장남으로서의 집안계승과 제사봉양 및 청구인에 대한 망 홍 ○ ○ 의
- 3.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사전증여를 이유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
- 2. 주민등록표등본
- 3. 사망진단서
- 4. 등기부등본별지 명세서 생략

2015. 1. 1.

인 지

청구인 홍길동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³⁷⁾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u>상 속 포 기 서</u>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
상속포기자 (상속인)	미 국 내 현 주 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영주권번호	피위임자와의 관계
	성 명	
피위임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
	주 소	
상속포	기 내용	본인은 피상속인 亡 의 상속인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속물건 및 기타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이에 따라 피 위임자인 ()에게 상속포기업무처리를 위임함.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상속포기자	성명: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 관련 정보 안내

	기관	전화 및 홈페이지
조상땅찾기 서비스	국토교통부	044-201-349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금융감독원	www.fss.or.kr
등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02-3480-1389
가족관계등록(호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세금	국세청 민원실	1588-0060
부동산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1599-0001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상담전화 132
	LA 카운티 사무소	562-462-2125
아포스티유	OC 카운티 사무소	714-834-2500
	CA주정부 아포스티유사무실	213-897-3062
미국법률상담	Legal Aid Foundation	323-801-7991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이용·배포를 금지합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대표 전화 : 213-385-9300

FAX: 213-385-1849

E-MAIL: consul-la@mofa.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nconsulatela

트위터 : http://twtkr.com/kcglosangeles

편저자 : 심우정 · 김욱준 검사

박봄빛누리, 이유섭, 장안나, 최윤지, 한아름, 한경민 사법연수원생